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일자리경제과)

의안번호	제 34 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2022. 9. 20.)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 관계 확립으로 노동경쟁력을 향상하고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 권리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의견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시 설 명 :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211(벤처창업지원센터 내) 206호
- 규 모 : 총 36.3m²

- 시설내용 : 사무공간 및 상담실
- 위탁비용 : 매년 예산 편성액 이내(시비 보조율에 따라 조정)
 - 나.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
 - 다. 위탁방법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 라. 위탁사업의 범위 : 근로관련 법률상담 및 근로복지 지원 사업 등

3. 관련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 다. 서울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 · 운영의 위탁)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중소영세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저임금노동자, 청소년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 관계 확립으로 노동경쟁력을 향상하고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의견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위탁 대상 현황

- 시설명 :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 위치 : 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 206호(성북구 화랑로 211)
- 규모 : 36.3m²(11평)
- 시설내용 : 사무공간 및 상담실
- 최초위탁 : 2017. 7. 10.
- 현재위탁 : 20. 01. 01. ~ 22. 12. 31.(3년)
- 위탁기관 : 서울일반노동조합(대표 김형수)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직원 20명)
- 예산
 - 2020년 : 3억7,042만원(전액 시비)
 - 2021년 : 3억6,291만원(전액 시비)
 - 2020년 : 3억7,120만원(시비 3억1,498만원(85^), 구비 5,622만원(15%))

○ 성북구 지역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당사자 역량은 취약하고, 노동조

합,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 등 이들을 위한 사업수행에 참여할 단체가 전무한 상태임. 열악한 성북지역 노동시장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고, 노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및 성북구 차원의 노동정책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다각적인 노동 지원사업이 절실한 상태이며,

- 기존의 근로자 복지시설이 주로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동권익센터는 취약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사업에 집중하게 되는 특성이 있음.
- 센터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노동상담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자교육 및 취업지원, 노동자 문화 복지 프로그램 운영, 기타 노동복지증진 사업을 꾸준히 해왔으며, 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취약근로자들이 처한 열악한 근로환경과 조건, 차별적 대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며, 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